

(붙임 2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비	고
<b>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</b> (생략) 1. (생략) 2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 3. ~ 5. (생략)		<b>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</b>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</u> 사업자등록증명(사본) 3. ~ 5. (현행과 같음)			- 제출자료 변경 및 유효기간 명시	
<신설>		<b>부 칙 (2024. 4. 25.)</b>  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기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u>제2조(경과조치)</u>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<u>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u>			- 부칙신설  - 시행일 명시	
<별표1>		<별표1>			- 각주 추가	
<b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sup>1)2)</sup></b>		<b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sup>1)2)3)</sup></b>				
전산 코드	지원대상	지원 부문	선정기준			
(생략)						
A3	혁신기업	일반	- (생략) - (생략) - 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‘특허증’ - 「실용신안법」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‘실용신안 등록증’ -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‘디자인 등록증’ - <u>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</u> - (생략) - (생략)			- 자구 수정 - 자구 수정 - 자구 수정 - 기술평가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등급 제한
(생략)						
전산 코드	지원대상	지원 부문	선정기준			
(현행과 같음)						
A3	혁신기업	일반	- (생략) - (생략) - 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‘특허증’을 <u>제출한 기업</u> - 「실용신안법」 제20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‘실용신안 등록증’을 <u>제출한 기업</u> -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9조에 따른 특허청장이 발급한 ‘디자인 등록증’을 <u>제출한 기업</u> - <u>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술평가인증서(은행 자체 TCB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은 기술평가등급이 T4 이상인 기업</u> - (생략) - (생략)			
(현행과 같음)						

현행				개정안				비고
전산코드	지원부문	지원부문	선정기준	전산코드	지원부문	지원부문	선정기준	
A8	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	전략	- (생략) - (생략) -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'이차전지 관련 업종 <sup>3)</sup> 확인서'를 제출한 기업	A8	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	전략	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'이차전지 관련 업종 <sup>4)</sup> 확인서'를 제출한 기업	- 각주 번호 수정
(생략)				(현행과 같음)				
<u>&lt;신설&gt;</u>				A10	수출관련기업	전략	-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장이 발급하는 '수출유망 중소기업 추천서'를 제출한 기업	- 지원대상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의 추천을 받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추가
(생략)				(현행과 같음)				
A13	농림수산업관련기업 <sup>4)</sup>	전략	(생략)	A13	농림수산업관련기업 <sup>5)</sup>	전략	(현행과 같음)	- A13 ~ A16의 각주 번호 수정
A14	명절·재해자금 등 <sup>5)</sup> 필요기업	일반	(생략)	A14	명절·재해자금 등 <sup>6)</sup> 필요기업	일반	(현행과 같음)	
A15	기타지원기업 <sup>5)</sup>	전략	(생략)	A15	기타지원기업 <sup>6)</sup>	전략	(현행과 같음)	
		일반	(생략)			일반	(현행과 같음)	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	특별	-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<sup>4)</sup> 1) ~ 7) (생략)	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	특별	-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<sup>4)</sup> 1) ~ 7) (현행과 같음)	
주 : 1) ~ 2) (생략)				주 : 1) ~ 2) (현행과 같음)				
<u>&lt;신설&gt;</u>				3) <u>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</u>				- 유관기관 추천기업임에도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각주에 명시 및 각주 번호 수정
3) (생략)				4) (현행과 같음)				
4) (생략)				5) (현행과 같음)				
5) (생략)				6) (현행과 같음)				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표2&gt;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sup>1)</sup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335 992 1069"> <thead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/tr> <tr> <td>운송관련 서비스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주점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금융 및 보험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부동산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전문 서비스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/tr> <tr> <td>교육 서비스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보건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오락관련 서비스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기타 개인 서비스업</td> <td>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<u>&lt;신설&gt;</u>		운송관련 서비스업	(생략)	주점업	(생략)	금융 및 보험업	(생략)	부동산업	(생략)	전문 서비스업	(생략)	<u>&lt;신설&gt;</u>		교육 서비스업	(생략)	보건업	(생략)	오락관련 서비스업	(생략)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<p>&lt;별표2&gt;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sup>1)2)</sup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23 335 1841 1069"> <thead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도소매업</td> <td>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</td> </tr> <tr> <td>운송관련 서비스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주점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금융 및 보험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부동산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전문 서비스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수의업</td> <td>731 수의업</td> </tr> <tr> <td>교육 서비스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보건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오락관련 서비스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기타 개인 서비스업</td> <td>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도소매업	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	운송관련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주점업	(현행과 같음)	금융 및 보험업	(현행과 같음)	부동산업	(현행과 같음)	전문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수의업	731 수의업	교육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보건업	(현행과 같음)	오락관련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<p>- 각주 추가</p> <p>- 제외업종 추가</p> <p>- 제외업종 추가</p>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&lt;신설&gt;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송관련 서비스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점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 및 보험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동산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 서비스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&lt;신설&gt;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 서비스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락관련 서비스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소매업	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송관련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점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융 및 보험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동산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의업	731 수의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락관련 서비스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</p> <p>2)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도 울산본부장이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 특히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명에 '호프'·'부동산'·'약국'·'병원' 등 제외업종으로 판단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불건전, 사행성 조장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</p>	<p>- 업종코드를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